



언론 사람

언론중재위원회 NEWS

/ 역사 속 언론

조광조를 각인시킨 폐비 신씨 복위 상소 사건

/ 위원회뉴스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2015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언론중재위원회

2015
04

Vol. 178



나비

중년의 혈압을 잡기 위해

아내의 등살에 몸을 푸는 골프연습장

까짓것 죽어 있는 공 하나 못 칠까

힘껏 스윙했더니 제멋대로 날아간다

어깨 힘을 빼란다

온몸에 잔뜩 힘으로만 모여진 자국들

그동안 뻗뻗하게 단련된 내 척추는

기울이거나 휘는 것이 서툴다

딱 잡은 두 손의 고집만큼

열 받은 등에 흥건히 고여 가는 땀

점점 혈압이 오른다

시퍼런 핏대로 날을 세운 골프채가

가라앉은 마음을 자꾸 휘젓는다

문득 그려보는 내 몸 속의 원

무게중심만 남기고 양손은 허공에 맡겨

삶의 부드러운 궤적을 그려야

온몸의 체중을 멀리 보낼 수 있는 것을

세상을 그리는 원이 부드러울수록

허공은 더 큰소리로 반응하는 것을

한 번의 날갯짓으로

자신의 체중을 날려 보낸 나비 한 마리

팔랑팔랑 눈앞을 스쳐간다

양원홍

- 1968년 제주 출생
 - 2010년 시문학 1월호 신인우수작품상으로 등단
 - 제주작가회의 회원, 한국 시문학회 회원
 - (사)제주영상문화연구원 원장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강사
 - 언론중재위원회 제주중재부위원, 운영위원
-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피해 구제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정·중재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분쟁의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 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 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에 보도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ADR 전문교육 &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

조정·중재를 비롯한 소송 이외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관한 전문교육과 언론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pac.or.kr

모바일웹 m.pac.or.kr

조정중재아카데미 edu.pac.or.kr

언론중재Eye-Net people.pac.or.kr



Contents

2015 April Vol.178

- 04 역사 속 언론 조광조를 각인시킨
폐비 신씨 복위 상소 사건
- 06 문화가 산책 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지기
- 07 古典名句 “덕불고德不孤, 필유린必有隣”
- 08 신 동의보감 발효 식품과 유익균
- 09 상담노트 속칭俗稱의 명明과 암暗
- 10 조정후기 “인턴십 교육프로그램을 ‘열정페이’로 오해” 주장
- 중재부 합의 이끌어 내
- 11 지상 중계 2015년 제1차 지역인터넷신문
워크숍, 제주에서 열려
- 12 위원회뉴스·위원동정
- 14 조정중재사례
- 15 독자마당

발행인 박용상

편집인 권우동

발행일 2015년 4월 1일

등록 2009년 12월 7일 서울중. 라00325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TEL 02-397-3114 FAX 02-397-3069

구독신청 홍보팀 TEL 02-397-3082~3

편집·디자인 (주)잉카커뮤니케이션즈 TEL 02-548-1008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조광조를 각인시킨 폐비 신씨 복위 상소 사건

정국의 뜨거운 감자, 폐비의 복위 문제

조광조(趙光祖:1482~1519)는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개혁적인 성향을 보였던 인물로 꼽히고 있다. 16세기 초반 비범한 카리스마를 무기로 등장하여 성리학 이념이 구현되는 도덕정치의 실현을 부르짖고 이를 직접 실천했던 인물 조광조. 그가 정계에 입문하여 주목을 받은 데에는 당시 정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한 언론으로서의 힘이 있었다. 조광조는 1510년 과거 초시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합격하고, 1515년 성균관에서 치른 알성시에도 2등으로 급제하여 국왕인 중종의 주목을 받았다. 반정공신들의 득세 속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종은 성균관을 찾아 새로운 인재를 구하려 했고, 이때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 옛 성인의 이상적인 정치를 다시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책문(策問)을 던졌다. 조광조는 '정실하게 도를 밝히고 항상 삼가는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마음의 요체로 삼을 것'을 핵심 요지로 하는 답안을 냈는데, 이 책문을 계기로 가능성만 있었던 학자 조광조는 중종의 파격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다. 1515년 11월 조광조는 조선시대 언론기관인 사간원의 언론직인 정언(正言)이 되었고, 정언이 된 지 불과 이틀 만에 그의 이름을 강하게 각인시키게 된다. 발단이 된 것은 중종의 정비였다. 가 반정 직후 바로 쫓겨나 폐비(廢妃)가 된 단경왕후(端敬王后) 신씨(愼



氏:1487~1557)의 복위를 요청한 박상(朴祥)과 김정(金淨)의 상소였다. 단경왕후 신씨는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의 딸로서, 중종을 왕위에 추대한 공신들은 반정 직후 왕비를 폐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

다. 왕비가 죄인 신수근의 딸이므로 국모로 마땅치 않다는 이유였다. 반정공신들에게는 언젠가 아버지를 죽인 자신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인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중종으로서는 아무 잘못 없는 아내를 내쫓아야 할 형편이었지만 반정에 의해 웅립된 만큼 공신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결국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난 지 1주일 만에 단경왕후는 폐위되어 쫓겨나고 말았다. 단경왕후가 폐위된 후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尹氏)가 왕비가 되었지만, 1515년(중종 10) 인종을 출산한 직후 승하하였다. 한동안 잠잠했던 단경왕후의 복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것도 중종의 왕비 자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폐비의 복위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인물은 담양 부사 박상과 순창 군수 김정이었다. 이들은 중종의 구언에 응하여 상소문을 올렸다. 주요 내용은 먼저 폐비 신씨가 폐출된 지 1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신씨의 폐출은 명분이나 이유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반정 초에 3대장(박원종, 성화안, 유순정)이 신수근을 제거한 뒤 왕비가 그 딸이므로 후환이 있을까 염려하여 폐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왕을 위협하기를 다리 사이와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희롱하듯 하고 국모를 내쫓기를 마치 병아리 팽개치듯 하였다."고 하면

光祖

서 단경왕후를 폐위시킨 반정공신 세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과 박상의 상소가 정국에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한 공신 세력들은 반격에 나섰다. 김정과 박상이 “사특한 의견을 올렸다.”면서 국문을 할 것을 청했고, 중종은 결국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유배시켰다.

조광조, 할 말을 하는 언론임을 각인시키다

김정과 박상의 상소문 파동이 잦아들 무렵 이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핀 인물이 조광조였다. 조광조는 언론직을 제수 받은 지 불과 이틀 밖에 되지



않았지만 박상과 김정을 유배시켰던 대간(臺諫)들의 전원 파직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조광조는 “언로가 통하고 막히는 것은 국가에 가장 중요한 일로서, 통하면 다스려져 평안하고 막히면 어지러워지고 망하게 됩니다. 말이 혹 지나쳐도 마음을 열어놓고 너그럽이 받아들이는 것은 혹 언로가 막힐까 염려해서입니다.”라고 전제하면서 말이 지나쳐도 언로는 열어놓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박상과 김정이 왕의 구언(求言)에 응하여 의견을 올린 것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 지 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였다. 조광조는 대간이 그 상소를 그르다 하여 죄주기를 청하여 금부의 낭관(郎官)을 보내어 잡아오기까지 한 조치는 지나치다고 지적한 후에, “김정 등에 대하여 재상(宰相)이 혹 죄주기를 청하더라도 대간은 구제하여 풀어 주어서 언로를 넓혀야 할 터인데, 도리어 스스로 언로를 훼손하여 먼저 그 직분을 잃었으니, 신이 이제 정언이 되어 어찌 구태여 직분을 잃은 대간과 일을 같이하겠습니까? 서로 용납할 수 없으니 양사(兩司)의 대간을 파직하여 다시 언로를 여십시오”라면서, 양사, 즉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들을 파직하여 다시 언로를 열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조광조는 박상과 김정의 폐비 복위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언로를 수용하지 않고 이들을 국문할 것을 청한 대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환시켰던 것이다.

조광조는 언로가 막히는 것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김정과 박상 등이 말한 일이 마땅하지는 않으나, 그 상소는 버려두고 따지지 않아야 납언(納言)하는 덕이 드러나거니와, 재상도 왕께서 그 말을 쓰지 않으시는 줄 알고서 시비를 논하지 않았는데, 대간이 굳이 죄주기를 청하여, 왕을 불의에 빠뜨리어 간쟁을 거절하는 조짐을 만 들어서 만세에 성덕의 누가 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한 뒤에는 국가에 큰일이 있더라도 어찌 감히 구언할 수 있겠으며, 구언하더라도 누가 감

히 말하겠습니까? 외방(外方)의 초야에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말하고자 하는 자가 김정과 박상 등의 일을 길에서 듣고서 그만두니, 치세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때의 대간이 아직도 다 관직에 있는데 어찌 신과 서로 용납되었습니까?”

조광조는 왕이 납언(納言) 즉 언론을 수용하지 않고, 언론을 탄압하는 국면을 마련하면 결국에는 지방의 선비 어느 누구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할 것임을 지적하고 자신도 물러날 것임을 시사하였다. 조광조의 논리에 반박하기가 곤란해 진 중종은 “이 일을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섰고, 대신들의 건의 형식으로 박상과 김정의 국문을 청한 대간을 교체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갓 언론직에 진출한 조광조의 요구가 관철되는 순간이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급 언론 조광조는 전국에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화제의 인물이 되었고, 중종은 조광조에게 파격적인 승진으로 화답했다. 조광조는 1518년 마침내 언론의 최고 직책인 대사헌에 임명되어 개혁정치를 진두지휘하게 되었다. 조선을 대표하는 개혁가 조광조의 초기 등장에 언론을 중시하는 정치관이 있었고 이것이 그의 정치적 성장에 큰 자산이 되었음은 주목할 만하다. 자신의 시대를 ‘개혁의 시대’로 인식한 조광조는 이후 시대의 부정과 모순을 극복해가는 다양한 정책들을 강력하고 급진적으로 추진해 가게 된다.

송현민
음악평론가

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지기

솔직히, 클래식 음악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힘겨운 음악이라고 한다. '바바바 밤~'하는 멜로디로 유명한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도 이 도입부만 지나면 초심자들은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모른다. 가사도 없기에 대중가요처럼 따라 부르며 흥얼거릴 수도 없다. 가사가 있는 성악곡이라고 해도 외래어로 되어 있기에 난해한 건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클래식 음악을 왜 들으려고 하며, 고상한 취미로까지 삼으려고 할까? '멋'을 위해서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멋 부리기'를 위해서다. 이를 두고 자기과시욕이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멋'을 제대로 체득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예술(클래식)에 대한 취미는 당시의 역사와 사회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멋있는 인간이 되기, 공부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우선 클래식 음악을 취미로 하려고 할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암기로 외웠던 기억을 지우는 게 중요하다. 클래식 음악이 다가가기 힘든 것이라고 규정짓게 하는 것도 바로 학창시절의 시험을 위해서 외웠던 기억 때문이다. 그 뒤에는 흔히 알고 있는 음악부터 들으며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어디서든 이런 이야기로 운을 떼면 누군가가 꼭 이렇게 묻는다.

● “어떤 곡부터 들어야 합니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여기서 다른 이들은 모차르트, 베토벤, 브람스 등 교과서나 일상 속에서 들어보았음직한 작곡가의 곡을 추천한다. 사실 곡 추천만큼 위험한 방법(?)은 없다. 추천 받은 이들은 이 곡이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곡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번 들어보다가 “그것마저도 귀에 잘 안 들어온다. 나는 재능이 없나보다”라며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언컨대 첫 시작의 기준은 철저히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나의 귀가 끌

리고 당기는 곡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 때, 어떤 곡보다는 어떻게 들느냐가 중요하다. 일상공간에 클래식 음악을 '살며시 놓아본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자. 이럴 때는 KBS 1FM(93.1)을 청취하는 것이 제일 좋다. 클래식 음악의 인구가 줄고 있기에 저변 확대 차원에서 KBS 1FM은 초보자·중급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는 경쾌한 음악을, 퇴근시간인 오후 7~8시에는 분위기 있는 음악을 틀어준다. 이때에도 '감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어폰을 통해) '컷가에 머무르게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KBS 1FM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곡은 그냥 흘리면 된다.

집에서 들을 때도 '감상한다'가 아니라, 이 역시 '생활 속에 녹인다'고 생각해야 한다. 익숙하다 싶으면 볼륨을 살짝 높이면 된다. 어떤 분은 라디오 옆에 메모지와 펜을 놓았다고 한다. 밥 먹다가 좋은 음악이, 아니 귀에 끌리는 음악이 나오면 그 곡을 메모했다고. 그래서 그 수많은 메모들을 정리해보니 자신은 첼로 소리와 궁합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60세가 넘는 그는 지금 열심히 첼로를 배우고 있다.

● 한명의 작곡가와 사랑에 빠져보자

보다 심화된 방법은 작곡가와 사랑에 빠져보는 것이다. 강의를 나가면 수강생 중에 한 명의 작곡가의 음반을 모아야 할지, 아니면 카라얀과 같은 역사에 남은 지휘자의 음반을 모아야 할지 질문하는 이들이 꼭 있다. 귀에 익숙해지고, 취미를 위해 지갑을 열 준비가 된 상태. 필자는 작곡가를 택하라고 한다. 작곡가가 지닌 음악적 특징과 색채를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의 '밝음'과 베토벤의 '무게', 이런 식으로 말이다.

특히 클래식 음악계에서 작곡가의 탄생과 서거는 큰 역할을 한다. KBS 1FM에서는 “올해는 이 작곡가가 탄생한지 몇 주년 되는 해입니다”라며 많이 틀어준다. 또한 주요 곡들은 자주 연주되며, 음반이 새롭게 기획되어 발매되기도 한다.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한 베르디와 바그너가 탄생한지 200주년이었던 2013년에는 오페라단마다 베르디와 바그너의 명작들을 선보였다. 초심자들, 중급자들, 전문가든 오페라 애호가에게는 행복한 한 해였다.



● 올해는 시벨리우스의 해

올해는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시동을 걸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핀란드야와 교향곡 1~6번, 바이올린 협주곡 등이 세계 곳곳에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휘자 김대진이 이끄는 수원시립교향악단이 5·6·7·9·11월에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곡을 선보이며, KBS교향악단과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도 주요 교향곡을 연주한다.

클래식 음악계는 시벨리우스와 동시에 그의 고향인 핀란드의 문화와 예술을 주목하기도 한다. 우리에게 '자일리톨'로 잘 알려진 핀란드는 인구가 5백50만 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다. 하지만 오스모 뎀스케, 유카 페카 사라스테, 에카 페카 살로넨, 사카리 오라모, 미코 프랑코 등 세계적인 지휘자를 배출해낸 음악 강국이다. 시벨리우스도 '국보급' 예술가로 대접받는다. 그의 이름을 딴 공원이 있는가 하면 아테네움 미술관에서는 '시벨리우스와 예술 세계'라는 기획전을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선보였다.

국내에서는 시벨리우스의 레퍼토리 중 '핀란드야나 교향곡 중 몇 곡만이 연주될 뿐이다. 그래서 스웨덴의 비스(BIS) 레이블에서 나온 '시벨리우스 에디션'과 같은 음반은 실연으로 접할 수 없는 곡들이 모조리 담겨 있기에 시벨리우스에 대한 훌륭한 '교과서'라 특별히 추천하고 싶다. 모든 작품이 5장의 CD에 담겨 있으며, 4~5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이 어렵고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음악인 건 맞다. 하지만 접근은 가볍게 해야 한다. 이제 클래식 음악들을 생활 속에 살며시 놓아보자. 일단 기준은 '나의 귀'다. 그 다음에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곡 한 곡씩 늘려 보도록 하자.

글 | 송현민(음악평론가) | 음악 듣고 글 쓰며, 책상과 객석을 오고간다.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했고, '한반도의 르네상스'를 주장했던 음악평론가 박용구론으로 제13회 객석예술평론상을 수상했다. 현재 월간 '객석'을 중심으로 원고 집필과 강의를 하고 있다.



古典名句

덕불고 德不孤, 필유린 必有隣

(논어, [리인]25)

신정근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장

사람이 살면서 기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계절이 바뀌어서 새로 입은 옷의 호주머니에서 뜻하지 않은 돈을 발견하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피곤할 때 싸면서 맛있는 맛 집을 찾으면 기쁨이 커진다.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찮게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쁜 일 중에 하나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가 하고 그 상대가 하려는 말을 내가 하는 것처럼 만난 적도 없고 미리 입을 맞추지도 않았는데도 뜻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

「논어」를 보면 “덕불고 德不孤, 필유린 必有隣”([리인]25)이라는 구절이 있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뜻이다. “덕망 있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다”라고 말할 때 덕망은 사람을 끄는 힘을 가리킨다. 이러한 덕망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예술, 학문, 일상, 취미 등 다양한 영역에 해당된다. 이때 덕망은 꼭 밥을 자주 사준대거나 돈을 잘 빌려준대거나 하는 물질적 측면을 가리키지 않는다. 고민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위로를 해주는 등 마음이 가고 정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통해 덕이 생겨난다. 따라서 유덕자(有德者)는 상대를 배려하는 언행을 통해 주위 사람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상대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낀다. 들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괴로워하게 된다. 이처럼 함께 어울리며 뜻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이 무료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람이 아무리 독특하고 개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인 한 비슷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 시간가는 줄 모르는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논어」에서 말하는 “덕불고, 필유린”의 뜻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행복하다고 말하기보다 외롭다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기보다 서로 통하는 사람인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닐까? 마음이 맞는 짝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러면 나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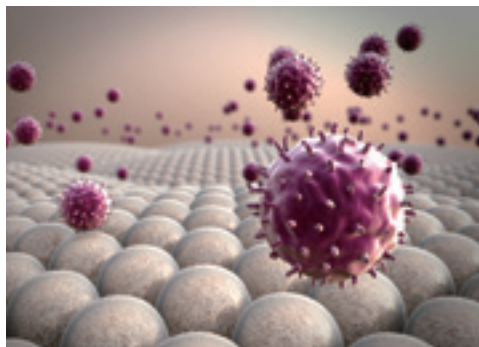
발효 식품과 유익균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누군가의 도움과 협력으로 살아야 한다. 인체의 기능도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들의 장(腸)에는 비피더스균이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아기들보다 훨씬 많이 있다고 한다. 몸에 유익균이 많을수록 더 많은 영양을 흡수하며 건강할 수 있게 된다.

몸 안에 유익균들이 줄어들면 해로운 균들이 대신하여 늘어나게 된다. 가끔 우리가 군것질을 하고 난 뒤 배가 아프면서 윗배가 팽창하고 더부룩해지고, 소화가 안 되면서 설사가 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세균(혹은 박테리아)은 설탕, 알코올, 탄수화물 등의 음식물에서 가스를 만들어내 팽만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뱃속에서 담즙을 분해해버려 기름기 있는 음식을 소화 못하게 만들어 지방흡수 장애와 설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리처드 존슨 박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설탕은 유해균도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몸속에 유해균이 증식하게 되고 장내 유익균의 균형이 깨어져 인체가 쉽게 병들 수 있다고 했다(설탕물에 과일이 잘 발효하는 원리이다). 그래서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고 종종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는 이유가 설탕을 섭취하고 난 뒤 배가 차가워지면서 장내 세균이 설탕을 먹고 이상 증식을 하기 때문이다.

뱃속에 유해 세균이 많을수록 여러 가지 피부병, 알레르기, 만성·과민성 복통 및 장염, 궤양성장염, 게실염, 여러 세균감염뿐 아니라 용종, 암 등의 각종 질환이 생기게 된다. 유해세균들은 위장관벽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유해성분들을 만들어 내어 전신적인 질환을 일으키며, 대개 만성 피로나 두통, 어깨 결림, 이유 없는 통증 등을 만들게 된다.



우리가 가끔씩 먹는 요거트에는 유산균이라는 것이 들어 있는데 유산균은 말 그대로 유산과 초산을 만들어 내 유해균의 생성과 증식을 억제한다. 우리가 흔히 먹는 김치나 된장, 고추장, 쌈장, 청국장, 여러 젓갈 음식 효소 등이 유익균의 풍부한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최근에 '프로바이오틱(probiotics)' 요법이라 하여 몸에 이로운 유익균들을 영양제 형태로 섭취하기도 한다. 또한 한약재를 꿀, 설탕, 술, 발효유, 효소 등에 담가 발효를 하여 섭취할 수 있다. 가령 인삼과 도라지는 사포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면역력을 좋게 하고 기관지와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찹도 복통이나 생리통, 몸살감기에 섭취할 수 있는데, 발효액을 먹게 되면 일반 찹 원액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다.

가슴이 불안해서 잠을 잘 못자는 경우에는 죽력액(竹瀝-대나무에서 모은 액기스)을 첨가할 수 있다. 생강과 대추는 비위를 따뜻하게 하여 기운이 나게 한다.

특히 평소 피로를 많이 호소하고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이나 감기, 몸살, 만성 피로를 갖고 사는 분들은 평소 먹는 음식을 깊이 고려해봐야 한다. 끼니를 자주 라면이나 햄버거, 피자 같은 즉석 식품을 먹게 되면 몸에 필요한 유익균들이 부족해져서 전신(全身)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자주 화학적인 약품을 복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체내의 유익균은 비

상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청년 때에는 그나마 체력으로 버티지만 사오십 대가 넘어가면서 점차 몸은 약해져가고 노년이 될수록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발효음식은 오랜 친구를 꾸준히 만나듯 대하는 음식이다. 혹시 건강 염려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 한걸음 실천해보자.

속칭俗稱의 명명과 암암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던 11세 어린이가 갑자기 20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다. 각종 언론에서는 사고 소식과 함께 놀이기구의 안전장치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기사를 앞 다투어 보도했다.

문제의 놀이기구는 양편의 지주대 사이에 와이어를 설치하고 작은 쇠바퀴를 와이어에 걸쳐 빠른 속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하강 레포츠타설이었다. 하지만 보도의 지면,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이 모든 설명을 구구절절 쓸 수는 없다 보니, 대다수의 언론이 세간에서 흔히 그 놀이시설을 일컫는 속칭 '짚○○'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사고 소식을 보도했다.

하지만 그 놀이시설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짚○○'도 아닐뿐더러 '짚○○'은 사고가 난 하강 레포츠타설을 주로 생산, 설치하는 '짚○○코리아'라는 특정회사의 상표 이름이었다. 2009년에 '짚○○코리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하강레포츠타설을 제작·설치하였고, 그 후에도 각종 놀이공원에 하강 레포츠타설을 주로 설치하다보니, 마치 이 회사가 생산한 상표이자 고유명칭인 '짚○○'이 하강레포츠타설의 보통명사처럼 굳어진 것이다.

보통명사가 되어버린 고유명사의 예는 여러 가지가 있다. 흔히 트렌치코트의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버버리(속칭 바버리)가 그러하고 일본식 청주의 상표 마사무네(正宗)가 일제시대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청주를 뜻하는 보통명사로 굳어진 것도 비슷한 경우이다. 미국 3M의 상표인 스카치 테이프가 셀로판 접착테이프를 일컫는 보통명사가 되어버리는 등 유사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물론 자신들이 만든 상표가 보통명사로 오해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업계에서 유명하다는 뜻도 되니 좋을 수도 있다. 아마도 사고가 나기 전에는 홍보효과도 톡톡히 누렸으리라. 하지만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고 나니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회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온통 불행한 사고와 연관 지어 보도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줄지에 사건의 주된 원인을 업체가 제공한 것처럼 몰릴 지경이었다.

위원회의 접수상담팀을 찾은 업체의 임원은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 두려움이 엄습하더라. 과거 통조림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왔다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많은 통조림 업체들이 피해를 본 사례를 비롯해, 보도로 인해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본 최악의 경우가 떠올라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라며 한탄했다. "한방에 훅 간다"는 말이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실감이 났다니 그간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것 같았다.

문제는 언론사의 태도였다. 업체에서 언론사에 일일이 전화하여 보도가 잘못되었으니 시설의 이름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도의 오류는 인정하되 언론사가 잘못된 것은 없으니 수정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어쨌든 세간에서 그 놀이시설을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사실이고, 하필 그 명칭이 어느 회사, 또는 상표의 이름이었다고 한들 언론사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정보도 청구권은 보도자체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때 보도를 진실하게 고치는 것이지 언론사의 고의, 과실을 따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세간에서 부르는 속칭 '짚○○'이 특정 회사의 상표임을 알지 못했던 것은 언론사의 잘못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다면 당사자로서는 보도 내용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자, 업체는 상담을 마치고마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다행히 조정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언론사들은 모두 보도를 수정했다. 이제 더 이상 사고와 관련한 뉴스에 '짚○○'이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는다. 아마도 업체 측에서는 업계에서 유명하여 "속칭"으로 불리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언론사들은 보통명사처럼 불리는 명칭이더라도 고유명사인 경우도 있음을 깨달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인턴십 교육프로그램을 ‘열정페이’로 오해” 주장

— 중재부 합의 이끌어내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청년들의 실업 문제는 한 계층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다. 행정부, 국회 할 것 없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연일 온갖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공인외국어 성적, 각종 자격증 등 취업을 위해 각종 스펙을 갖춰도 취업의 문은 좁게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이 힘들어지자 이를 악용하여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아예 무급으로 일을 시키는 고용주들도 생겨났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일할 기회만이라도 필요했던 청년들은 부당함을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열정페이’를 받으며 일하기도 한다. 이처럼 ‘열정페이’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많아지자 언론도 연일 이와 관련된 보도를 쏟아냈다. 조정대상보도도 이와 관련된 보도였다. 한 비영리 연구기관이 무급 인턴사원을 뽑아 정규직과 유사한 상시적 업무를 시키고 있다는 기사였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당 연구기관은 사실이 아

닌 기사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신청인인 연구기관은 해당 프로그램이 근로채용의 형태인 ‘인턴사원’제도가 아닌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인턴교육프로그램’으로 10년째 이어져오고 있어 최근 이슈가 된 ‘열정페이’와는 관계가 없으며, 모집공고상에 게재된 업무내용은 해당 인턴의 업무내용이 아닌 부서의 업무내용이라는 것이었다.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언론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모집공고상에 분명 ‘업무’, ‘근무’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중재부는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당 인턴 모집공고를 면밀히 살폈고, 기존에 실시됐던 인턴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및 상시근로여부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 검토하였다. 중재부는 심리에 참석한 양당사자들을 상대로 그때까지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에 임했다. 신청인에게는 모집공고상 언론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가 있었음을 주지시키고, 언론사에게는 해당 업무가 실질적으로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인지를 자세히 취재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

을 전달했다.

중재부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한 발씩 양보하여 신청인 인턴십 프로그램이 교육프로그램이며, 보도에 언급된 업무는 인턴의 업무가 아닌 부서의 업무라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피신청인이 게재하는 조정안을 내놓았고 양당사자 모두 이에 동의하여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이 시작되기 전, 잘못된 보도이기에 꼭 바로잡아야 한다는 신청인측과 신청인이 게재한 모집공고문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피신청인측이 팽팽하게 맞서 쉽지 않은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되었지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중재부의 합리적인 조정안에 양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조정은 양당사자간의 양보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이에 응할 사람은 없다.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양당사자에게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중재부가 추구하는 ‘조정’이다.

2015년 제1차 지역인터넷신문 워크숍, 제주에서 열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과 21일 제주 이비사호텔에서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인터넷신문의 역할과 언론조정·중재 제도'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터넷 신문 보도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보도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된 이번 워크숍에는 (사)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 소속 12개 언론사 대표 및 소속 기자들이 참석해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1부 강의는 양재규 교육콘텐츠팀장이 언론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2부 강의는 여운규 교육운영팀장이 조정 사례를 통한 위원회 조정과 중재 절차 등을 소개하였다.

이 날 워크숍에서는 국가기관이 낸 보도자료의 내용대로 기사화한 언론사의 책임 여부에 대해 열린 토론이 오갔다. 대구경북 지역 인터넷신문 <평화뉴스>의 유지웅 편집장은 “해당 기관 혹은 당사자에게 전화만 해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는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언론 스스로 팩트체크에 좀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사삭제, PR보도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해결이 가능한 위원회 조정중재제도의 장점에 대해 참석자 대부분 공감을 표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부산과 광주 지역에 교육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인터넷신문 등을 대상으로 한 언론피해 예방 교육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도 정기총회 개최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안 등 심의·의결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용상)는 3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운영위원 및 시정권고위원을 선출하고, 201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안,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위원회 역할 정립을 위해 인터넷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피해구제책을 마련하고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출된 운영위원 9명과 시정권고위원 7명의 임기는 2015년 3월 3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

▲ 박용상(위원장) ▲ 김길소(부위원장) ▲ 이은신(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 유일한(전 아리랑국제방송 보도위원)
▲ 최현주(계명대 언론영상학과 교수) ▲ 김명중(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민경택(전 충청일보 편집국장)
▲ 김선남(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 ▲ 양원홍(제주영상문화연구원 원장)

●시정권고위원

▲ 박용상(위원장) ▲ 홍은희(부위원장) ▲ 김수일(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권순택(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 한석동(전 국민일보 논설실장) ▲ 지성우(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동규(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선거기사심의위, 한위수 위원장, 오미영 부위원장 선출

2015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015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 심의위원회는 3월 2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기사심의위원장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부위원장에 오미영 교수(가천대 언론영상광고학과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에 대하여 2월 28일부터 5월 29일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2015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언론중재위원회 권우동 사무총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양경승 위원, 정동우 위원, 전진우 위원, 유원욱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한위수 위원장, 오미영 부위원장, 남래진 위원, 이상용 위원, 김태현 위원

까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에 게재되는 선거 관련 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을 심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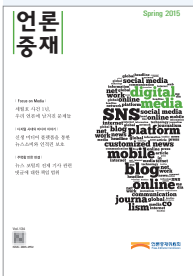
박용상 위원장, 강원지역 언론사 대표와 간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춘천에서 강원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주현 중재부장, 김길소 부위원장, 이택수 위원, 김세은 위원, 안정민 위원 등 강원중재부 중재위원 5명과 이희중 강원일보 대표이사,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대표이사, 김영환 KBS춘천방송총국 총국장, 이우용 춘천MBC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언론사 기자들을 위해 보도와 인격권에 관한 교육이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했고, “SNS 등에 퍼진 보도나 인터넷 상 댓글로 인한 피해구제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계간 『언론중재』 2015년 봄호 발간



위원회 계간지 『언론중재』 봄호(통권 134호)가 3월 30일 발간됐다.

“세월호 사건 1년, 우리 언론에 남겨진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김동규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서울제8중재부 중재위원)의 논문을 비롯해 최진순 한국경제신문 기자, 박진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의 논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판결 코너에는 “뉴스 포털의 전제 기사 관련 댓글에 대한 책임 범위”라는 주제로 유럽인권법원의 ‘델피 대 에스토니아 사건(Delfi AS v. Estonia)’에 대한 김재협 변호사의 판례 평석이 실렸으며,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신생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뉴스소비와 인격권 보호: SNS와 뉴스큐레이션서비스의 언론성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가 게재되어 있다.

위원동정 — COMMISSIONERS

신임 중재부장 7명 위촉

3월 12일자로 신임 중재부장 7명이 위촉됐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재부	성명	임기	비고
서울제1중재부	김용관	2015.3.12~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서울제2중재부	강태훈	2015.3.12~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서울제4중재부	이태수	2015.3.12~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부산중재부	김홍일	2015.3.12~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대구중재부	임상기	2015.3.12~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경기중재부	이근수	2015.3.12~2015.8.31	전임자 잔여임기
제주중재부	허명욱	2015.3.12~2017.3.30	전임자 잔여임기

‘매경 CEO 특강’에 강사로 나서

조재연 위원(서울제1중재부, 변호사)은 서울 주요 대학에서 열리는 ‘매경 CEO특강’에 강사로 나선다.

조 위원은 숙명여대에서 ‘시장경제 NIE 특강’이라는 과목명으로 강의한다.

고려대 관훈신영기금교수로 위촉

권순택 위원(서울제2중재부,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3월 4일 고려대 관훈신영기금교수로 위촉됐다.

권 위원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고려대 미디어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글쓰기’를 강의한다.

‘김영란법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 참석

지성우 위원(서울제7중재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월 18일 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강의실에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열린 ‘김영란법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와 언론의 자유와의 상관성, 언론의 자유 침해여부, 입법취지를 유지하는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 했다.

명예훼손 사례

■ 유명화가 작품을 다른 화가 작품으로 잘못 보도한데 대해 유명화가 작품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조정합의

A종합편성채널은 패널들이 대담하는 형식의 뉴스프로그램에서 B동양화가를 비방한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같은 동양화가인 신청인의 작품을 B화가의 작품으로 잘못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B화가의 작품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있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A채널이 무단으로 신청인 작품 이미지를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심리 결과 A채널은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신청인 작품이 잘못 사용됐음을 알리는 사과문과 함께 신청인 작품 4점의 이미지를 A채널 인터넷 홈페이지에 4일간 노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동일 내용을 1주일간 게재하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청자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을 1개월 간 게재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 소송 중인 사안을 편파적으로 보도한 건에 대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결정

C방송사는 서울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통행권 관련 소송사건을 보도하면서, 수십 년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인 신청인이 이웃 주민의 통행을 금지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신

청인의 행위는 형사상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토지는 수십 년간 외부 통행로로 이용된 토지가 아니었고, 일반교통방해죄와 관련해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종국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상대 당사자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보도되었다며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소송 중인 사안을 다루면서 일부 사실관계가 잘못 보도되었고, 일방 당사자의 입장이 편파적으로 보도되어 소송 사건 양 당사자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 정정 및 반론보도를 보도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 시청자가 오해할 소지가 충분한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결정

D방송사는 '비행기 회항 사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신청인이 해당 항공사로부터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항공사로부터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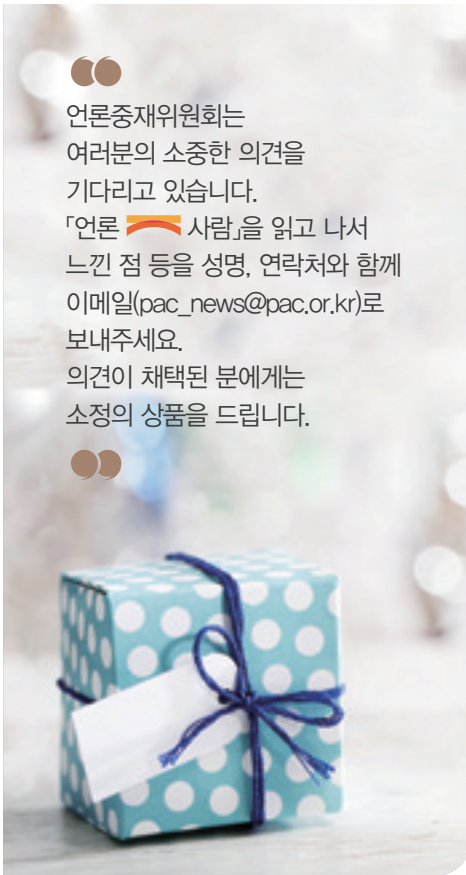
심리결과 중재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가 없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는 신청인이 회사의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초상권침해 사례

무관한 기사에 DB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초상권 침해한 사례, 150만원 지급 결정

E인터넷신문사는 언론사 DB에 저장되어 있던 신청인의 사진을 재활용하여 해당 사진과 전혀 무관한 기사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수년 전 박람회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촬영·보도된 바 있고, 전혀 무관한 내용의 조정대상기사에서 해당 사진이 재활용되었으며 해당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 게재되어 악성댓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중재부는 신청인의 초상이 동의없이 촬영·게재된 점과 해당 사진이 모자이크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금 150만원 지급 및 조정대상 기사(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포함) 하단의 댓글을 차단(또는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양당사자가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장희지

—

역사 속 언론 '남명 조식의 상소문, 언론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다' 기사를 보며 학창시절에 이름을 많이 들었던 남명 조식 선생의 이름이 떠올라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조식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왕에게 스스럼없이 직언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며 이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에 조식이 올린 상소문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식이 앞섰던 제도의 우수성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역사를 통해 현실을 반추할 수 있어 가장 좋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는 보기 힘들면서 드문 모습이 부럽기도 하며 그 당시의 상황을 선망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게도 여겨졌습니다. 역사를 교훈 삼아 현 시대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앞으로도 역사를 통해 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사를 계속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춘임

—

작지만 당당하고 알찬, 큰 생각을 키울 수 있는 「언론  사람」이 곁에 있어 늘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이번호 역시 모든 기사들이 한결 같이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정후기〉 칼럼에 소개된 '우는 여자' 이야기를 기사 속 주인공과 같은 직장 여성으로서 진심으로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민원인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려 주는 조사관의 배려 깊은 마음도 보기 좋았지만,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언론조정신청을 처리해 나가는 위원회 여러분들의 세심한 사건처리 과정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우는 여자'가 아닌 '웃는 여자'가 많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데 언론중재위원회의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업무처리를 기대합니다.

소통하는 창, 언론중재위원회 SNS.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www.facebook.com/pacnews



twitter.com/pac_news



공정한 언론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재보궐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선거일 : 2015년 4월 29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2015년 2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됩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신문, 잡지, 뉴스통신의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자체심의를 합니다.



후보자(출마 예정자)는 불공정선거기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체심의 및 시정요구의 조치내용 :

사과문, 정정보도문, 경고결정문, 주의 사실의 게재 또는 경고, 주의, 권고 결정



후보자와 언론사의 반론보도청구사건을 처리합니다.

후보자(정당의 경우 중앙당)는 언론사에 반론보도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보자나 언론사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48시간** 이내에 반론보도 게재여부
를 결정합니다.

